창녕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977호

2026년 창녕군 제6·7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수정)

2026년 창녕군 제6·7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수정사항: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간 수정

[평생교육사 분야]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합분석실 검정요원 분야]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26년 11월 16일

창녕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비고
평생교육사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종합분석실 검정요원	기술지원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1명**	2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거 주 지: 제한 없음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평생 교육사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 임기제)	●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분야** 근무경력 • 「평생교육법」에 따른 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 **[우대사항]**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분야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종합 분석실 검정요원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농업환경(토양) 분석 업무** 관련 근무경력 **[우대사항]** ▶ 관련분야(토양분석) 자격증 소지자 •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전임근무(주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함)

❍ 직무내용

임용분야	주 요 업 무
평생교육사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 평생학습관 운영 및 각종 평생교육 사업 추진 • 평생학습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종합분석실 검정요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 토양 정밀분석 및 분석장비 운영·관리 -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농가 맞춤형 시비처방 및 영농 상담 • 퇴·액비 분석 및 농업환경 분석업무 지원 - 퇴·액비 부숙도·함수율 검사 및 중금속 분석 - ICP 등 정밀분석장비 운영 및 시료 전처리 • 토양검정 관련 연구사업 및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그 밖에 종합검정실 관련 업무

4. 보수 수준 및 복무

❍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단위: 천원)

임용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근무시간	연봉책정액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0,782	**50,272**	주40시간	**50,272**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62,096	**44,296**	주35시간	**38,759**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복무는 임용 시 임용약정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

5.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적격검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2026. 11. 23. ~ 11. 25. (3일간)	서류전형	2026. 11. 27.(금) 예정	-	2026. 11. 30.(월) 예정	군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6 12. 9.(수) ~ 12. 11.(금) 예정	군정회의실 (군청 2층)	2026. 12. 16.(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접수장소: 창녕군청 2층 행정과 행정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u>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u>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받을 분” 은 공란으로 둠)로 동봉

※ 우편접수 시 창녕군 행정과 행정팀으로 사전 연락(☎055-530-1206)

8.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9.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6 · 7급 7,000원, 8 · 9급 5,000원] ▸ **방문접수: 창녕군 수입증지**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별도 동봉, 응시원서 부착금지) ※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사용불가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3매 이내) ▸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5호]
⑥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⑦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각 1부 ▸ 대학교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서류	비고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추가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⑩ 임용 관련분야 면허증(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⑫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⑬ 그 밖에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⑭ 증명사진 1매(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⑮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해당자)	[별지 제8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10. 응시자 주의사항

-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단,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 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
-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합격자 발표는 창녕군 홈페이지((http://www.cng.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팀(☎055-530-1206)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비 고

□ 제출서류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 별지 제3호 서식)	
3.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7.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8.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석・박사) 증명서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0.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1. 임용 관련 분야 면허증(또는 자격증) 사본	
12. 그 밖에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 증빙자료	
13.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14.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필요시) (*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으로 고정 후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창녕군 제6·7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녕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 당 □ 해당 없음	
주 소	(㉒)			창녕군수입증지 첩부
전자우편				
연 락 처 (휴대전화)				

응 시 표 (지방임기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 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창녕군 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 성 요 령》

① 「* 응시번호」 표시란: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농업주사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등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곤충사육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명 기재

⑥ 창녕군 수입증지: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를 구입하여 붙임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 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 6 · 7급: 7천원, 8 · 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경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년/월/일)	직 책	담당업무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최종경력부터 기재)	00.00.00~00.00.00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병역

병역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 하세요

☐ 병역필 (기간 : ☐ 병역 미필 ☐ 병역 면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이 력 서 작 성 요 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경력 : 위에서 부터 최근경력 순으로 작성
   - 작성 예: (주)0000 / 2019.01.01. ~ 2020.12.31.(0년00개월) / 사원 / 품질검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근무기간

   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 시간임기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56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나.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 기간(시간)이 명확히 명시된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4. 학위: 대학 이상은 전공, 학위 취득일 및 학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기재

   ※ 고졸 이하의 경우 학위취득일에 졸업일, 학위 종류에 '고졸', '중졸' 기재

   ※ **출신 학교명 기재 금지**

5. 자격증: 해당자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채용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군복무,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 금지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참고로 응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성과목표별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본인은 창녕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6·7회 창녕군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학위, 경력, 자격 및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창녕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 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 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성명 : (서명/인)	20 . . . 성명 : (서명/인)

창녕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주30시간)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주20시간)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 담당자 : ○○○ **(전화 : -)**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창녕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